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1,523,232	28,845,697
일반회계	896,226,198	26,886,786
특별회계	65,297,034	1,958,911
공기업특별회계	60,890,827	1,826,72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605,407	1,038,16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285,420	788,563
기타특별회계	4,406,207	132,186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227,397	66,822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930,053	57,90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48,757	7,46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0년 재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31,88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다.